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제 호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업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 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업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업단지관리법의”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로 한다.

부칙(조례 제 68호, 1988. 5. 1.)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장림공업지구(낙동강하구 1차 및 2차 매립지를 말하며 <u>공업단지관리법의</u>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지구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지구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목적) ----- ----- -----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의</u> ----- ----- ----- ----- ----- ----- -----</p>
<p>제 3 조(적용세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 3 조(적용세율) ① ----- ----- ----- ----- -----</p>
<p>1. 부산시내(<u>공업단지관리법의</u>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타인소유의 공장용과 세물건을 임차하여 2년이상 공장을 경영하던 자를 포함한다)가 공업지구 안으로 공장을 이전 당해 공업지구안에서의 이전과 부산직할시 북구사상공업지구내에 전입하는 공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의 이전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p>	<p>1. -----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u> -----) ----- (-----) ----- (-----) -----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취득한 사업용과세물건(종전공장 규모를 초과하여 확장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8조 제1항 제 2호 제4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 다.</p> <p>2. (생략)</p> <p>② (생략)</p>	<p>----- (----- ----- -----).----- -----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